수출현안 · 수입제도 모니터링(수시) 양식

2018년 3월 2일/홍콩지사(대만사무소)

구 분	핵심 내용
수입검사/ 통관검역 전반	□ 대만 인삼 비관세장벽 신규 규정에 대한 대응방안 마련

주요 내용 및 시사점 · 대처방안

< 중약재(한약재) 관리규정(신설) >

❑ 인삼에 대한 규정 신설로 한국 고려삼 제품의 대만 수출 및 유통이 어려워짐

○ (기존) 인삼(홍삼) 100% 제품이 아닌 경우 식품으로도 판매 가능

○ (신설) 인삼(홍삼) 10% 초과 제품은 식품으로 판매 불가

※ 인삼(홍삼) 10% 초과제품 : 홍삼정, 정관장에브리타임 등 홍삼농축액류가 해당됨

❑ **배경/경과사항**

○ 한국 인삼업체의 대만 수출통관과정 중 세관에서 해당제품이 식품/건강식품/중약 중 어느 부류에 해당하는지 의문제기

○ 이에 대해 대만 위생복리부 산하의 중약사(중약담당 부처)에서 중약으로 해석

※ 기존에는 위생복리부 산하 TFDA(식품담당부처)에서 100% 제품이 아닐 경우 식품으로 유권해석

○ 또한, 중약사에서 대만 유통 중약재의 '세부 분류규정' 제정 추진

- 중약재 분류규정 초안

1류	2류	3류	4류	5류
일반식품	일반 향신료	차류	**단일품목 사용불가(차류는 예외)** **식품원료로 사용가능 (단, 10%이하)**	
구기자, 백합 등	태국고추, 정향 등	백약근, 석송 등	**인삼, 서양삼 등**	오미자 등

☞ **4류 : 인삼 함량이 10% 초과할 경우 건강식품 또는 중약(한약재)으로 분류**

❑ **문제점**

○ 新규정에 따라 홍삼제품이 건강식품 또는 중약으로 분류될 경우, 한국 홍삼제품의 대만 수출에 타격이 있을 뿐만 아니라 수출이 된다고 하더라고 수입 유통경로의 제한으로 인해 판매실적 하락이 예상됨

- **대만내 한국 주요 홍삼함량 10% 초과 제품 매출액**

매출액(천$)	'15년	'16년	'17년	'18년(e)
홍삼정	552	748	763	900
에브리타임	-	361	1,535	2,500
기타	1,180	1,129	1,267	2,076
계	**1,732**	**2,238**	**3,565**	**5,476**
전년비 성장률		29%↑	59%↑	54%↑

* 자료원 : 한국인삼 대만법인에서 매출액 정리표 제공

○ 건강식품 등록 및 인증마크 획득에는 많은 시간(약 1~ 2년)과 비용이 소요되며 한국인삼업체 및 건강식품 중 대만에서 건강식품으로 등록된 후 수입된 사례가 없음

※ KGC는 '16년부터 홍삼분 제품에 대한 등록 추진 중

○ 본 규정은 **한국인삼업체를 타겟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강력한 비관세장벽**으로 한국인삼업체에 상당한 피해가 예상됨

- 본 규정과 관련된 제1회 **공청회('18.3.7)에 KGC 대만법인 및 대리상이 배제됨**

※ 공청회 개최 통보는 24개의 중약관련 협회 및 대만기업에만 통보(참석조건 부여)

- KGC 대만법인은 주타이베이한국대표부를 통해 참가가능 여부를 타진했으나 여전히 배제된 상태임

❑ 시사점 및 대처방안

○ 제 1순위 : **대만에서 인삼을 1류(일반식품)로 분류토록 추진**

- 중국 양나라 도홍경의 신농본초경에는 인삼이 上藥중의 上藥으로 독성이 없어서 오래 복용할수록 좋은 약재로 분류되어 있음
- '09년 아시아 CODEX, '15년 세계 CODEX에 식품으로 등록되어 있음
- 한국에서는 연간 2만여톤의 인삼이 생산되며 소비자 Needs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가공•판매되는 남녀노소 누구나 즐기는 대표 식품으로써 안전성이 보증됨

○ 제 2순위 : 기존처럼 인삼함량으로 분류기준 없이 인삼 외 기타성분이 소량 포함되면 식품으로 간주하는 TFDA 식품 기준으로 함

□ 근거 자료 : (붙임파일 참고)